I·SEOUL·U 너와 나의 서울

서울특별시

서울시 홈페이지 seoul.go.kr

수신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업자(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등)
(경유)
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정부는 설 연휴 이후, 급속한 확진자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, 3월 개학,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,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(2단계)과 수도권 외 지역(1.5단계)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·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3. 이에 「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지침」을 재 안내하오니 서울시 관내 특수판매업자(방문·다단계·후원방문판매 등)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또한,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,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《 주 요 내 용 》

○ 적용지역 : 서울특별시, 경기도, 인천광역시
○ 적용시설 :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 등)
○ 적용기간 : 2021. 3. 1.(월) 0시 ~ 2021. 3.14.(일) 24시
○ 적용단계 : 거리두기 2단계
○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 호

붙임. 1.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지침 1부.
2. 관련 법률 1부. 끝.

서 울 특 별 시 장

주무관 이택선 민생대책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2/26 박주선

협조자

시행 공정경제담당관-4244 (2021. 2. 26.) 접수 ( )

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담당관/ (서소문동)

전화 2133-5367 /전송 02-768-8852 / dlxortjs32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

특수판매업 방역수칙 안내문

이용인원 제한 안내

정부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조정에 따라 이용인원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.

- 업 체 명 :

- 시설면적 : ㎡

- 이용인원 : **명(8㎡ 당 1명)**

○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

※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

○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

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
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

※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

○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
○ 방역관리자 지정

○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

○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

○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

○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

○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

○ 공연, 노래부르기, 음식제공 등 금지

○ 22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○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의2호, 제83조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・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・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○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3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・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